

신용거래(융자,대주) 설명서

(2025. 3. 31.)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·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▣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**신용거래**는 고객님의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"신용거래융자" 또는 "신용거래대주"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"신용거래융자"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.
- "신용거래대주"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(담보는 매도대금)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.
-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 시 **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**가 필요합니다.
- (임의처분(반대매매) 위험)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
- (레버리지 위험)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**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**
- ※ <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>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,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.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,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**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**가 있습니다.

▣ 민원·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

- ↳ Q1.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?
 - 일부 증권(예 : 증거금률 100%인 증권)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.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,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↳ Q2.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?
 -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 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.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,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↳ Q3.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?
 - i)상환기일 미상환 시 ii) 이자·매매수수료·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

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.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**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.**

↳ **Q4.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?**

-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**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** 또한 **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** 가능하나, 연장은 90일 단위로 가능합니다. 다만, **신용거래대주**의 경우 **90일 단위로 연장 가능**하고 **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**됩니다. (단, 매매거래정지,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상환 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경우顺延합니다.)

▣ **투자위험등급 : 1등급 [매우높은위험]**

- 당사는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[매우높은위험]에서 6등급[매우낮은위험]까지 분류하고 있으며, 본 상품은 1등급[매우높은위험]에 해당합니다.

▣ **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**

☆ **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- 만기 미상환 시 **담보증권이 임의처분**되며, **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☆ **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- <예시> 투자원금 400만원, 신용거래용자금 60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 하였으나,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(140% 가정)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

※ 반대매매 절차

(D일) 담보유지비율 하회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→ (D+1)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→ (D+2) 반대매매 실행

| 날짜 | 주식가격 | 계좌평가금액 | 담보평가비율* | 비고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용거래 매수 | 10,000원 | 10,000,000원 | 166% | - |
| D일 | 8,300원 | 8,300,000원 | 138% |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|
| D+1일 | 8,100원 | 8,100,000원 | 135% | 추가담보 미납 (30만원 담보부족) |
| D+2일 | 반대매매 실행 (S, A, B 종목군 전일종가의 -15% 적용 가정) $* \text{반대매매 수량} = \frac{8,100,000 - (6,000,000 \times 1.4)}{8,100 - (6,890 \times 1.4)} = 195$ ☞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'☞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'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

* 담보평가비율 = 계좌평가금액/용자금

☞ (S, A, B종목군 반대매매의 경우) 전일종가(8,100원) 대비 15% 하락한 가격(6,890원)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, 195주 반대매매 필요

→ 반대매매 수량(195주)이 7,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(140%)를 충족하기 위한 **임의처분 금액은 약 137만원(195주×7,000원)으로 담보부족금액(30만원)의 4.6배 수준**

☞ C, 불가등급 종목군 반대매매의 경우) 전일종가(8,100원) 대비 30% 하락한 가격(하한가, 5,700원)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, 1,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

→ 반대매매가 7,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700만원(1,000주×7,000원)으로 **투자원금(400만원)의 상당부분(75%)에 달하는 손실(300만원)**

■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<http://www.bnkfn.co.kr>) 또는 고객센터 (1577-26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 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① 상품개요 및 특성

가. 대상 고객

- 개인 (채무불이행자, 성년후견/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, 미성년자, 법인 등 불가)
 - ※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

나. 신용거래 대상 종목

| | |
|-------------|--|
| 신용거래용자 대상종목 |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단,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,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) ※ 신용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: HTS 또는 MTS 참조 |
| 신용거래대주 대상종목 |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※ 대주 대상종목 확인 방법 : HTS 또는 MTS 참조 |

다. 신용거래 보증금율

- ☑ 신용거래 용자, 대주

| 구분 | 구분 | 종목등급 | 신용보증금률 | 현금 | 대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용자 | 기본형 | S,A | 45 % | 45 % | 0 % |
| | | B,C | 50 % | 50 % | 0 % |
| | 적극형 | S,A | 45 % | 20 % 이상 | 25 % 이하 |
| | | B,C | 50 % | 25 % 이상 | 25 % 이하 |
| | 임의형 | S,A | 45 % | 3 % 이상 | 42 % 이하 |
| | | B,C | 50 % | 25 % 이상 | 25 % 이하 |
| 대주 | 대주매각대금 100% (대용 → 현금순) | | | | |

라. 용자한도

- ☑ 고객별 한도 : 20억원 (심사를 통하여 증액 가능)
- ☑ 종목군별 한도 (심사를 통하여 증액 가능)

| 구분 | S종목군 | A종목군 | B종목군 | C종목군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신용거래용자 | 25억원 | 20억원 | 15억원 | 5억원 |
| 신용거래대주 | 1억원 | 1억원 | - | - |
|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| 3천만원 | 3천만원 | - | - |

마. 담보유지비율

- ☑ 담보유지비율 : 140% (임의상환 담보유지비율 130%)/신용거래 대주전용계좌는 105%
-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.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'계좌 담보유지비율'로 산정됩니다.

바. 용자·대주 기간

- ☑ 신용거래용자 : 90일 (90일 단위로 연장가능)
- ☑ 신용거래대주 : 90일 (90일 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. 단, 매매거래정지,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상환 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합니다)
-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, **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.**

사.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

| 구분 | 담보유지비율 | 추가담보 제공 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매매계좌 (신용거래용자·대주 동시거래 가능) | 130% ~ 140% 미만 | 추가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|
| | 130% 미만 | 추가담보요구일 당일 이내 |
|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| 105% 미만 | 추가담보요구일 당일 이내 |

아. 이자율 및 징수일 등

- ☑ 이자율 적용기준

| 구분 | 1~7일 | 8~30일 | 31~60일 | 61~90일 | 연장시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신용용자 및 신용대주 | 연 5.90% | 연 7.50% | 연 8.00% | 연 8.50% | 연 8.50% |
| 연체이자율 | 연 9.50% | | | | |

- ☑ 이자 징수일

☑ 신용용자 및 신용대주 : (정기) 매월 첫 영업일/(수시) 매매상환시 결제일, 입금고상환시 상환일

- ☑ 이자율 적용방식

☑ 신용용자 및 신용대주 : **[체차법] - 용자기간별 일수에 대하여 해당 이자율 적용**

※ 적용방식(소급법, 체차법, 단일법) 대해서는 부록(용어안내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예시> 신용거래용자금액 1천만원, 용자기간 50일 가정 시

※ 계산식 : 신용거래용자금액 X 기간별 이자율 X 신용거래용자 사용일수/365일

☞ (총이자금액) 1천만원 X {5.90% X 7일 + 7.50% X 23일 + 8.00% X 20일} / 365일 = 102,410원

* 기타 당일 신용매수 후 매도시 이자 미발생 (단, 대주의 경우 당일매도/당일매수 시 1일 이자 발생)

자. 대주매각대금 이용료

- ☑ 회사는 신용거래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.
- ☑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: 연 0.1%
- ☑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: (정기) 매월 첫 영업일/(수시) 매매상환시 결제일, 입고상환시 상환일

2.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- ☑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.

* 단, **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,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이 (0.4491639%) 적용됩니다.**

- ☑ 인지세 : 회사부담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
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

☑ 신용거래용자 : 매도상환, 현금상환 가능

- (매도상환) 신용용자 매수 증목을 매도하여 상환
- (현금상환) 용자금을 현금으로 상환

☑ 신용거래대주 : 매수상환, 현물상환 가능

- (매수상환) 대주매도했던 증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
- (현물상환) 대주거래한 동일 증목으로 상환

☑ 상환매체 : 영업점 및 온라인(HTS 및 HTS), 유선 상으로 신청 가능

☑ 상환처리일 :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(휴장일 제외)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.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(17시까지)한 당일 상환됨

☑ 상환방법 :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

※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

● (담보의 징구) 회사는 신용거래용자 시 매수한 주권(증권예탁증권 포함)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,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.

● (일반매매계좌의 담보증권 평가) 당일 종가(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)로 평가합니다. 다만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.

※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● (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증권 평가)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. 다만 담보증권 종류 별 할인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※ 당일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● (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)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→ ②담보 증권 →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.

● (종목등급별 반대매매 수량계산 및 주문 기준가격)

- (S,A,B 종목) 전일종가의 -15%
- (C, 불가등급 종목) 전일종가의 -30%

√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

√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

√ 이자, 매매수수료,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

● (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)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.

$$\bullet \text{ 반대매매 수량} = \frac{\text{담보평가금액} - (\text{신용융자금액} \times \text{담보유지비율})}{\text{전일종가} - (\text{반대매매 기준가격} \times \text{담보유지비율})}$$

- ◎ (통지방법)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,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
※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,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**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.**

☞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,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.

- ◎ (채무 총당 순서)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→ ②연체이자 → ③이자 → ④채무원금 순으로 총당됩니다. 다만,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총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- ◎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9.50%를 적용합니다.
- ◎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√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용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

√ 「용자금/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용자금(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)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◎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**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6 용자·대주 기간 및 연장사항

☑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 : 90일

- ◎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
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**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** 있습니다.
- 연장시점에 **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** 계좌이고, **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**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(유선, 온라인, 영업점 내방)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.
- **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** 단, 매매거래정지,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**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, 상환만 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장일인 때에는** 순연합니다.

7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◎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**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◎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, 증권담보용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**불이익 발생 가능성**이 있습니다.

8 신용거래의 위험성

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사례1>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%이며, 보증금률 50%인 경우 500만원을 가지고 1,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00%(=1,000÷500×100)임

→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(500만원)을 상회하게 됨

<사례2>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%이며, 보증금률 100%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은 경우

→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(1천만원)을 상회하게 됨

-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**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.**
- 신용거래계좌의 **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
- 회사는 **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**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**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**합니다.

※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,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

- (호가가격제한)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**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**됩니다. 다만,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,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**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**할 수 있습니다.
- (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)
 - 신용거래대주는 **하나의 증권사를 선택**하여 매매,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.
 -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(현금주식+신용주식)가 있는 경우 **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**합니다.
 - 대주 잔고 보유 시 **동일종목 매수가 불가**합니다.
- (공매도 포지션 보고·공시 제도)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(공매도 잔고)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.
 - ※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**과태료 등이 부과**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/fss/kr/acro/nsp/report.jsp>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(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) **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**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**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.**

- * 증권신고서, 소액공모공시서류, 주요사항보고서, 한국거래소 공시(공정공시 포함)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
- 위반 시 **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** 다만, 모집(매출)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*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.
- * 모집(매출)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모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모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(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) 등

10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**계약체결일**, ② **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**(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**내에**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**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**합니다.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(내방 및 우편 등)으로 **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※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,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나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**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다.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
-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11 기타 유의사항

- **약관·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**
 - 회사는 필요한 경우 **신용거래용자(대주)이자율, 연체이자율, 대주매각대금 이용료, 신용거래보증금률,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, 담보유지비율,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**할 수 있습니다.
 - 회사는 **신용거래약관을 변경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, 홈페이지, HTS 등에 게시합니다.
 - 약관의 **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**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.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**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**
 - ※ 다만, 관계법규 제·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,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12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**차필로**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신용거래 시 **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② 신용거래용자금 또는 대주증권 미상환시,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 금액 미납 시 등의 경우 **반대매매**가 일어나며, **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③ 연체 시 **연체이자**가 발생되며, **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신규·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→ 본인은 주식회사 (주)BNK투자증권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의 [주요 내용 및 고객부담비용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
→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[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 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577-260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bnkfn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본 설명서는 신용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계약하기 전에 본 설명서와 함께 **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[설명직원 확인]

(BNK투자)증권 ()지점 (직책) (은)는 상기 설명서와 **동일한 내용으로**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,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.

(☎ _____, 홈페이지 www.bnkfn.co.kr).

설명직원 20 . . . (서명 또는 인)

※ [부록]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| 용어 | 설명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용거래 보증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용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.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용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담보유지비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거래시 용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용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대용증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,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반대매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용자분은 매도,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체차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,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<예시> 신용거래용자금액 1천만원 가정시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95 1070 1481 1429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이자기산일</th> <th>7일 경과</th> <th>30일 경과</th> <th>60일 경과</th> <th>90일 경과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(9.4)</td> <td>(9.11)</td> <td>(10.4)</td> <td>(11.3)</td> <td>(12.3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소급법)</td> <td colspan="5">이자율 연 8.5% 적용</td> <td>☞ 총 이자 = 209,589원(a)</td> </tr> <tr> <td>(체차법)</td> <td>연 5.9%</td> <td>연 7.5%</td> <td>연 8.0%</td> <td>연 8.5%</td> <td></td> <td>☞ 총 이자 = 194,191원(b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이자기산일 | 7일 경과 | 30일 경과 | 60일 경과 | 90일 경과 | | | (9.4) | (9.11) | (10.4) | (11.3) | (12.3) | | (소급법) | 이자율 연 8.5% 적용 | | | | | ☞ 총 이자 = 209,589원(a) | (체차법) | 연 5.9% | 연 7.5% | 연 8.0% | 연 8.5% | | ☞ 총 이자 = 194,191원(b) |
| | 이자기산일 | 7일 경과 | 30일 경과 | 60일 경과 | 90일 경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(9.4) | (9.11) | (10.4) | (11.3) | (12.3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(소급법) | 이자율 연 8.5% 적용 | | | | | ☞ 총 이자 = 209,589원(a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(체차법) | 연 5.9% | 연 7.5% | 연 8.0% | 연 8.5% | | ☞ 총 이자 = 194,191원(b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매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유통대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 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.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